

작성 방법

1.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: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②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란: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3. ③ 차감한도란: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며,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②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합계 금액을 적고,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각 적습니다.
4. ④ 이월된 차감액란: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,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. 이 때 외국법인세액의 이월된 금액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의 이월된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5. ⑤ 당기 발생 차감액란: 해당 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및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적습니다.
6. ⑥ 당기 차감 대상액란: ④ 이월된 차감액과 ⑤ 당기 발생 차감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⑦ 당기 실제 차감액란: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합계 금액의 금액은 ③ 차감한도란의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금액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8. ⑧ 이월배제액란: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.
9.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란: ⑥ 당기 차감 대상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10. ④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 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.
11. ⑩ 사업연도란과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란: ⑩ 사업연도란에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,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란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적습니다.
12.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: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누계로 적습니다.
13. ⑬ 당기 차감 대상액란: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등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.
14.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: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.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.